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112호, 2023. 6. 28. 공포)으로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 반환 시 적용되는 이자율 적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하위법령 제때 마련)

2. 주요내용

가. 모범도시숲 인증 취소 절차(안 제11조제6항 ~ 8항)

모범도시숲 인증 취소를 위한 조사·검토, 통보, 취소 현황 공개 절차를 마련하여 규정

나. 보조금의 반환 이자율 현실화(안 제12조)

「도시숲법」 상의 보조금 반환 이자율을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자율을 현실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 ~ 4.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 및 절차)”를“(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 및 인증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인증”을 “인증 현황과 제7항에 따른 인증 취소”로 한다.

⑥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한 경우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에 조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모범 도시숲등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인증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을 말한다)”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 및 절차) ① ~ ⑤ (생략)	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 및 인증 취소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한 경우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에 조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u><신 설></u>	⑦ 산림청장은 모범 도시숲등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인증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 인증 현황과 제7항에 따른 인증 취소 -----.
제12조(보조금의 반환이자) 영 제9조 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이자)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시숲경관과	
연 락 처	(042) 481-4224